

이은해, 자수해놓고 경찰 조사 비협조적

형 감면 위한 전략...“형법상의 자수 해당” ‘필요적 감경’에 의한 자수 인정은 어려워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아버지에게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에 응했던 이씨와 공범 조현수(30)는 정작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행위가 향후 법정에서 자수로 받아들여지더라도,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최대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고 혹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숨기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씨 아버지의 설득을 통해 자수를 결심하고 체포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6일 아버지에게 ‘자수할테니 경찰관과 동행해 오프스텔 15층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층에서 조씨만 발견해 체포하고, 이후 이씨가 숨어있던 층과 호수를 파악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가 2주 이상 도주를 이어가다 돌연 자수한 것은 감형을 노린 행위라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씨가 아버지의 권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체포된 것을 자수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실제 두 사람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범죄행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린 후에도 해당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경찰에 근거지 정보를 전달한 등의 행위는 사실상 형법상 명시된 자수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52조는 피의자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정도 범법범인 참본 변호사는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만 형법 조항에 있다”며 “수사기관이 (이씨와 조씨의) 범죄를 인지하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내) 검거를 위해 가던 도중이라도, (이씨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젠더 법률전문가인 김재희 변호사는 “이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본인의 위치를 알려준 부분은 있다”며 “전국적으로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자수를 내세워 형량을 줄이는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행위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량 감경으로



이러지 정도는 아니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그동안 이씨의 행위가 ‘필요적 감경’에 따른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씨는 아버지를 통한 했지만 (경찰의) 체포를 용이하게 한 정도의 (자수) 행위에 불과하다”며 “필요적 감경을 위한 자수라고까지 인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자수를 통해 감경을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범죄를 누우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비난 가능성이 약하다는 점과, 수사가 용이해지도록 해 국가가 형벌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필요적 감경에 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4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일부 범죄만을 자수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던 것과 관련,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누우

침이 없는 자수는 감경이 가능한 자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형법 52조의 자수를 형 감경 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가 범인이 잘못을 누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 자수일 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 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월에도 자수와 같은 감경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무고나 위증죄와 같은 필요적 감경이 아닌 임의적 감경은 법관이 재량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와 조씨의 이번 사건 역시 법관이 감경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얼마나 형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인지 등의 태도에 따라 추후 이씨의 자수를 (진정한) 자수의 의미로 볼 것인지, 자수하더라도 감경을 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해양경찰교육원, 내실 강화 위한 실습현장 목소리 청취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소속기관인 충남 천안 직무교육훈련센터(센터장 성창현)에서 내실 강화를 위해 실습교육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에 총력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공원 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담양경찰, ‘안전한 담양 만들기’ 위해 CCTV 설치 총력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2022년 역점 추진시책으로 ‘안전한 담양 만들기’를 위해 마을 자위방범용 CCTV 확충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양소방중대119안전센터, 음식점 후드·덕트 화재 주의 당부

광양소방서 중대119안전센터(센터장 정용선)는 음식점 내 후드·덕트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심종섭기자



광주 남부소방, 여성이용소방대장 취임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15일 남·여 이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이용소방대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동부소방, 소방특별조사자 실무 강화 교육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13일 오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 실습실에서 소방특별조사요원의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거리두기 해제, 공원에서 펼쳐지는 작은 콘서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튿날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식나눔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농사 망치는 돌발해충 3종, 부화 시기 빨라

미국선녀벌레·갈색날개매미충·꽃매미 내달 중순 부화

농작물과 과수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 3종(미국선녀벌레·갈색날개매미충·꽃매미)이 평년보다 빠른 5월 중순 남부지역부터 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해충 발육 모형과 기상청 기상자료를 활용해 돌발해충 3종의 발생권역별 월동난 부화 시기를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1~2일 빠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밝혔다.

농진청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측정된 1~3월 전국 평균 기온은 2.7도로 평년(2.3도)보다 0.4도 높게 나타났다. 월동난이 부화하는 5월 중·하순 무렵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돌발해충은 전남·경남지역에서 5월17~21일, 그 외 지역은 5월 22~27일 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년과 비교해 1~2일 빠르고

작년보다는 4~6일 늦은 것이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전남·경남 5월 17일, 그 외 지역은 5월22~24일, 미국선녀벌레는 전남·경남 5월21일, 그 외 지역 5월27일, 꽃매미는 전남·경남 5월19일, 그 외 지역 5월 24~26일 등이다.

이들 해충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부적으로 많이 발생하거나 신규 유입 지역에서 피해가 우려돼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가 필요하다.

특히 갈색날개매미충은 산수유, 감, 사과, 대추에, 미국선녀벌레는 단감, 매실, 풍, 인삼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꽃매미는 포도나무를 포함해 11종 이상의 과수에 피해를 입힌다.

농진청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갈색날개매미충 55품목 ▲미국선녀



벌레 73품목 ▲꽃매미 64품목 등 방제용 약제를 발생이 많은 시기에 대상 작물과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살포해야 한다고 했다. 등록 약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농진청 농약 안전정보시스템(apsis.rd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세원 농진청 작물보호과장은 “돌발해충은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에 주로 서식하며 산림지에서 부화해 농경지로 이동하는 행동특성이 있다”며 “이렇게 농림지에서 동시 발생하는 돌발해충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부화 시기에 맞춰 1~2회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100억 사기혐의’ 블루문펀드 대표측 재판서 “기망 없었다”

100억원대 p2p 방식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루문 펀드’ 대표 측이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표는 수사 중 캄보디아로 이동했다가 체포됐고, 기소 후에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량)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블루문 펀드 대표 김모(44)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의 구성요건인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중계 플랫폼을 운영한 것을 감안하면 변제자력을 따질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할로 대책을 마련하던 중 캄보디아에 간 것이 도주라고 소문이 나면서 이 사태가 발생했다. 그 이전까지 투자 상품은 정상 상환이 이뤄졌다. 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씨에게 책임을 넘기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7년 6월 블루문펀드를 설립한 김씨는 p2p 대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 투자금을 유통업체에 대출해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약속해 총 101억원을 쟁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김씨가 당시 신규 투자자 기존 투자자 상환액을 매우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김씨는 외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김씨를 캄보디아에서 체포했다.

이슬비기자